

상벌 규정



한국프로축구연맹

목 차

제 1조. 목적	4
제 2조. 상별의 가치	4
제 3조. 적용 범위	4
제 4조. 설치 및 구성	4
제 5조. 위원장 대행	5
제 6조. 상별위원회 소집	5
제 7조. 상별위원회 회의	5
제 8조. 제척 등	5
제 9조. 징계의 대상 및 사유	6
제 9조의 1. 징계사유 발생 시 신고	6
제 10조. 징계의 적용될 규정 등	6
제 11조. 징계 절차의 개시	6
제 12조. 징계의 대상별 종류	7
제 13조. 징계 기준	8
제 14조. 조사권	8
제 15조. 출석 진술, 자료 제출	8
제 16조. 징계 양정	9
제 17조. 징계 결정 통보	9
제 18조. 징계 효력 발생	9
제 19조. 재심	9
제 20조. 징계의 집행	10
제 21조. 징계 시효	11
제 22조. 징계의 감경 및 사면 등	11
제 23조. 활동정지	11
제 24조. 포상의 실시	12
제 25조. 포상 심의	12
제 26조. 포상의 종류	12
제 27조. 추천	13

부칙

제 1조. 시행일	13
제 2조. 기타	13

[별표 1] 유형별 징계 기준

1. 승부조작 및 불공정행위	14
2.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16
3. 폭력 행위	17
4.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인 행위	19
5. 경기규정 위반	19
6. 범죄 및 기타 반사회적, 비윤리적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21
7. 반도핑(약물검사) 위반행위	23
8. 프로계약 위반	24
9.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	25
10. K리그 비방, 명예실추 행위	26
11. 연맹 정관, 규정, 이사회 결정사항 및 지시사항 위반	27
12. 벌점 및 제재금	27

[별표 2] 포상의 대상 및 기준

1. 단체상 및 개인상 시상 기준	29
2. 기타 개인 기록 시상	30
3. 포상 내역	31
4. 기타	32

상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라 함) 정관 제14조에 따라 징계와 포상의 적정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상벌의 가치

징계는 축구장 질서를 중심으로 한 프로축구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밝고 즐거운 축구 문화를 진작하여 프로축구의 국민 스포츠로서의 위상 및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포상은 연맹 산하 각 클럽 감독 및 코칭스태프, 선수 기타 프로축구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여 프로축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에 그 가치를 둔다.

제3조 적용 범위

- ① 이 규정 중 징계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 1) 연맹에 등록된 클럽(이하 '클럽'이라고만 함)의 감독 등 코칭스태프, 선수
 - 2) 각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
 - 3) 연맹의 지휘 감독의 대상인 단체 및 개인
- ② 이 규정 중 포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제1항의 대상자로 국한하지 아니한다.
- ③ 징계 결정 당시 제1항의 신분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징계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분보유 여부는 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단,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전 연도에 등록했던 선수가 중재위원회 결정을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하여도 징계 규정이 적용된다.

<변경. 2026/01/16 개정>

제4조 설치 및 구성

- ①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맹에 상벌위원회를 둔다.
- ② 상벌위원회는 상벌위원장 및 총재가 위촉하는 7인 이하의 위촉직 상벌위원으로 구성된다.
- ③ 상벌위원장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10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총재가 이사회에 동의를 받아 위촉하고, 위촉직 상벌위원은 축구에 대한 풍부한 시견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총재가 위촉한다.
- ④ 연맹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상벌위원장의 명을 받아 상벌위원회 심의 준비·상벌위원회 소집 통지·회의록 작성·상벌위원회 의결 사항 통지 및 보고 등

상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다.

제5조 위원장 대행

- ① 상벌위원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상벌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호선하고 이사회가 직무대행을 선출한 때까지 상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상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벌위원회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재가 지명하는 상벌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상벌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 상벌위원장이 위촉되기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6조 상벌위원회 소집

- ① 상벌위원회는 총재의 소집 명령, 2인 이상의 상벌위원 또는 사무총장의 소집 요청, 징계 제소 접수에 따라 상벌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상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상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상벌위원회 회의

- ① 상벌위원회는 재적 상벌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징계 사유의 인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출석 상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명·강등은 재적 상벌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③ 사안이 긴급하여 상벌위원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상벌위원장은 전자문서나 팩스 등으로 상벌위원의 의견을 묻고, 그 결과 제1항 및 제2항, 제11~~14~~6조 제6항의 개회 요건 및 의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벌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벌위원장은 차회 상벌위원회에 위 서면 결의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2026/01/16 개정>

제8조 제척 등

상벌위원장 및 상벌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1) 상벌위원장 및 상벌위원이 안건 심의 대상자인 때
- 2) 상벌위원장 및 상벌위원이 안건 심의 대상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 3) 안건 심의 대상자가 공정한 안건 심의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여 기피 신청을 하거나 기타 상벌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9조 징계의 대상 및 사유

- ① 각 클럽, 감독 등 코칭스태프, 선수, 연맹 임직원, 각 클럽 운영 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이 법령·정관 및 규정(이하 '법령 등'이라고만 함)을 위반하거나, 연맹이나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고만 함), 감독관청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여 한국 프로축구의 위신을 손상케 한 경우, 연맹은 이들을 징계할 수 있다.
- ②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예시는 [별표1]과 같다.
- ③ 연맹은 심판이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혹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협회에 해당 심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이 규정 적용 대상자가 징계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한국프로축구의 위신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언행을 하거나 기타 징계사유에 근접한 언행을 한 경우 총재는 그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의 촉구를 할 수 있다.
- ⑤ 비위자가 징계절차 개시 당시에 신원의 변동 등으로 제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연맹은 비위자에 대한 징계를 협회에 요청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K리그 내 축구 관련직 종사를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1 징계사유 발생 시 신고 의무

- ① 각 클럽의 선수, 감독 등 코칭스태프, 임직원(이하 "소속 선수 등")은 [별표1]의 제1항 (승부조작 및 불공정행위) 및 제6항 (범죄 및 기타 비신사적인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즉시 클럽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각 클럽은 소속 선수 등이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맹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연맹은 각 클럽 및 소속 선수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경우 상벌위원회는 그에 상응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에의 적용될 규정 등

<변경. 2026/01/16 개정>

- ① 징계 사유가 되는 사실(이하 '비위사실' 또는 '비위행위'라고만 함)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②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행위시의 법령 등에 의한다. 다만 비위행위 성립 후 법령 및 정관,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비위행위가 법령 등 위반행위가 되지 아니하거나 징계 양정 기준이 감경된 때에는 징계 결정 당시의 변경된 법령 등의 취지에 따른다.

제11조 징계 절차의 개시

- ① 경기 감독관, 심판, 각 클럽 대표자는 비위사실 발생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소명하여 비위자를 상벌위원회에 징계 제소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정관 제1511조 제3항에 따라 제9조의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연맹에 요청할 수 있다.
<변경. 2026/01/16 개정>
- ③ 사무총장은 제1항의 징계 제소 청구가 있거나 비위사실의 제보를 받거나 기타 경위로 제9조의 대상자의 비위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비위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상벌위원회에 징계 제소를 할 수 있다.
- ④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연맹이나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제보함으로써 무고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 ⑤ 상벌위원장은 비위자 및 비위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제소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비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무총장은 조사결과를 상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경기 규칙 위반에 대한 심판의 제재가 누락·불충분하거나 심판의 제재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벌위원회는 징계 제소 없이도 서면 결의로써 심판 제재에 추가하여 징계하거나 심판의 제재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규칙에 따른다.

제12조 징계의 대상별 종류

- ① 클럽에 대한 징계
 - 1) 제명
 - 2) 하부리그로의 강등
 - 3) 자격 정지 :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맹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 4) 선수영입금지 :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선수 영입 금지
 - 5) 승점 감점
 - 6) 경기 제한 : 무관중 홈경기 개최 또는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에서의 홈경기 개최
 - 7) 제재금 부과
 - 8) 응원석, 원정응원석 폐쇄
 - 9) 경고
- ② 개인에 대한 징계 (감독 등 코칭스태프, 선수)
 - 1) 제명
 - 2) 자격정지 :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종 내외 축구관련직 종사 자격 정지
 - 3) 출장 정지
 - 4) 제재금 부과
 - 5) 사회봉사명령

6) 경고

- ③ FIFA 경기규칙, 대회요강 등에 따른 심판의 경고 및 퇴장명령, 경기몰수, 재경기, 경기무효 조치는 이 규정에 의한 징계와는 독립하여 효력을 갖는다.
- ④ 기타 클럽 운영자 등 임원 및 클럽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는 클럽에 대한 징계로 갈음한다. 이 경우에 연맹은 클럽에게 해당 비위자에 대하여 축구 관련 직무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징계에 부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피해배상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 징계 기준

- ① 징계 양정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② 징계 양정의 기준은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수정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권

- ① 상벌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징계 대상자 및 비위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각 클럽 등 관계자에게 비위사실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경위서, 확인서 등 관련 서류나 물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상벌위원회는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현장검증이나 기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조사는 연맹 사무국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는 3,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 출석 진술, 자료 제출

- ① 상벌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 상벌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고지하고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의견서 기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징계 사유 통보 및 진술 기회의 제공은 상벌위원회 개최 1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징계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징계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서면을 소속 클럽에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면을 받은 클럽은 지체 없이 징계대상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상벌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징계대상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고서도 징계 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술 및 자료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④ 징계대상자가 질병, 해외 체류, 구금시설 내의 수용, 그 밖의 사유로 상벌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징계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서나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하거나, 그러한 자료

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 ⑤ 징계대상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맹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징계 사유 통보 및 진술 기회의 제공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맹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징계 양정

- ① 징계 양정에 있어서 비위행위의 정도, 비위행위의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이후의 정황 및 징계 전력 등을 참작하여 가중 감경할 수 있다.
- ② 징계는 비위행위에 상응한 제재에 그쳐야 하고, 비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책적 요소, 관련자의 반사적 이익·부수적인 불이익, 불공정한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징계를 가중할 때에는 [별표1]에 정한 기준 상한선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 ④ 징계를 감경할 때에는 [별표1]에 정한 기준 하한선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 ⑤ 2부리그에 참여하는 클럽 및 관계자의 경우 제재금을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 ⑥ 감경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 거듭 감경할 수 있다.
- ⑦ 다수의 비위자의 조직적인 비위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
- ⑧ 징계 양정은 가장 경한 의견을 제시한 상벌위원 수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무거운 의견을 제시한 상벌위원 수를 누산하는 방식으로 하여 출석 상벌위원 5분의 3에 가장 근접한 상벌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기준으로 한다.
- ⑨ 징계의 경중은 제12조 제①항, 제②항에 나열된 순서대로 한다.
- ⑩ 본 규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는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6/01/16 개정>

제17조 징계 결정 통보

- ① 징계 결정 및 징계결정문은 징계대상자에게 전화, 전자문서, 등기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통보한다.
- ② 징계대상자가 징계결정문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③ 징계대상자에게 결정문 송달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클럽으로 송달하고, 클럽이 송달을 받은 날 이를 송달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징계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징계대상자에게 직접 징계결정문을 송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5조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8조 징계의 효력 발생

징계는 징계대상자가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 재심

- ①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징계 대상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경고 결정 및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재심 청구는 징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재금 부과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제재금을 예납한 후 할 수 있다. 단, 징계대상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거나 징계 감면 결정을 하며,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 ④ 징계기록만으로도 재심 결정을 하기에 충분하거나, 이사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심 결정을 할 수 있다.
- ⑤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 재심결정에 대하여 사무총장은 협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 징계의 집행

- ① 징계 결정은 연맹 사무국이 집행한다.
- ② 징계의 결정은 징계결정 후 집행이 가능한 최단시일에 집행해야 한다.
- ③ 재심청구로 징계결정은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총재는 사안이 중하거나 집행을 정지하면 징계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현저히 어려운 사항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④ 선수 또는 코칭스태프에게 부과된 제재금은 연맹이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 ⑤ 클럽에 부과된 제재금은 징계결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⑥ 클럽이 납기일까지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맹은 클럽에 지급할 금원에서 제재금 및 제20조 제8항의 지연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 ⑦ 클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재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납기일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맹은 제12조 1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⑧ 제재금 납부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일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금을 일할계산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⑨ 징계 결정의 집행은 당해 시즌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당해 시즌에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시즌으로 이월된다. 만일 징계대상자가 신원의 변동으로 징계의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K리그에서 활동을 재개할 때까지 징계의 집행은 정지된다.
- ⑩ 출장정지 결정을 받은 선수가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된 경우에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출장할 수 없었던 리그 경기는 출장 정지 대상 경기 수에 포함된다.
- ⑪ 징계의 집행과 관련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유예기간중 유사 사례 재발시 곧바로 유예된 징계가 집행되며 추후 재발된 건에 대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변경. 2026/01/16 개정>
- ⑫ 출장정지 징계의 집행의 있어서, 심판의 퇴장 판정, 혹은 규정 및 대회요강에 의한

출장정지와 상벌위원회 징계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아래의 순서로 집행한다.

- 1) 경기 중 주심의 판정에 의한 출장정지
 - 2) 규정 및 대회요강에 의한 출장정지
 - 3) 상벌위원회 징계에 의한 출장정지
- ⑬ 상벌위원회는 출장정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심판의 판정의 효력으로 부여되는 출장정지 경기 수를 감안할 수 있다.

제21조 징계 시효

- ① 비위행위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
다만 승부조작, 불법 스포츠 도박, 금품 수수, 성범죄, 입학(입시)비리, 인종·정파 차별적 언행 관련 비위행위에는 징계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② 비위행위자의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징계 절차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은 제 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징계의 감경 및 사면 등

- ① 징계 결정이 확정된 후 법령 및 제 규정의 개·폐 등으로 징계 결정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거나 프로 축구의 발전을 위하여 긴요한 필요가 있거나 리그의 사정 변경으로 징계 결정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징계 대상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 총재는 스스로 또는 상벌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결정을 감경 또는 사면(이하 '사면'이라고만 함)할 수 있다.
- ② 제명 결정에 대하여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자격정지 또는 출장정지는 효력발생일로부터 2분의 1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사면할 수 있다.

제23조 활동정지

- ① 총재는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가 승부조작, 심판매수, 마약, 병역비리, 도핑, 강력 범죄, 성폭력, 도박, 음주운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비위 행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로 인하여 한국 프로축구의 위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나 단시일 내에 상벌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상자에 대한 활동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활동정지'란 아래 각 호의 조치를 의미한다.
 - 1)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에 대한 활동정지
: 정관 및 제 규정에 의한 K리그 관련 일체의 활동 금지
 - 2) 감독 등 코칭스태프, 선수에 대한 활동정지
: K리그 경기의 출장 금지

- ③ 상벌위원회의 의견 제출에 관해서는 제7조 제3항을 준용한다.
- ④ 활동정지의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상벌위원회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총재에게 활동정지의 기간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활동정지 명령 및 기간 연장 명령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 ⑥ 활동정지 기간 중 계약해지, 등록 말소 등으로 대상자의 신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제9조 제1항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다.
- ⑦ 활동정지 명령의 집행과 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 1) 활동정지 기간 중이거나 기간 만료 후 비위 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상벌위원회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심의를 한다. 활동정지 기간 중 대상자에 대한 징계 결정이 있는 경우 활동정지의 효력은 소멸한다.
 - 2) 대상자에 대한 상벌위원회의 징계 심의 시 활동정지 명령 집행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3) 활동정지 기간 중이라도 비위행위의 근거가 없거나 비난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총재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 4) 활동정지 명령은 이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제24조 포상의 실시

연맹은 축구의 경기력 향상 및 위상 제고, 축구 산업 경쟁력 확보 등 축구 발전에 공적이 있는 인물과 단체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한다.

제25조 포상 심의

- ①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대회와 관련한 포상은 성적에 따라 경기 조직·운영자가 심의·포상한다.
- ② 현장 경기 외의 사유로 인한 포상 심의는 상벌위원회가 심의한다.
- ③ 기자단 투표, 팬투표, 기타 투표에 의한 포상자 선정은 종다수 득표순에 의한다.
- ④ 그 외의 달성 기록 및 별도 지표에 의한 포상은 필요시 연맹 사무총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26조 포상의 종류

-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각종 대회 성적에 따른 상
 - 2) 표창
 - 3) 공로상
 - 4) 감사상

- 5) 기록 달성에 의한 상
 - 6) 기타
- ② 포상의 대상·기준·내용은 [별표2]과 같다.
- ③ 포상 시기는 정기 포상과 수시 포상으로 구분한다.

제27조 추천

- ① 연맹은 필요시 연맹 임직원 및 분과위원회, 또는 회원단체 및 관련 기관에게 별도의 공적 조서 양식에 의한 포상 대상자를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연맹 각 클럽 관계자에 대한 정부나 상급 단체의 포상 추천은 상벌위원회가 심의한다.
- ③ 상벌위원회의 포상 심의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부당하게 포상 추천에서 누락된 자는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회의의 비공개 등

- ① 상벌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1) 상벌위원회의 회의
 - 2) 상벌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 3) 상벌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상벌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상벌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01/16 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단,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결의 이전 발생 사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 징계규정, AFC 규정, FIFA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1]

유형별 징계 기준

1. 승부조작 및 불공정행위 (부정·불법행위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

가. 승부조작, 승부조작 공모, 금품 수수

- ①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이 가담한 경우
클럽에 대하여
 - 제명
 - 하부리그로의 강등
 - 1년 이내의 자격정지
 - 1년 이내의 선수영입금지
 - 10점 이상 승점 **감점감정**
 -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② 개인에 대하여
 - 제명
 - 2년 이상의 자격정지 및 출장정지
 -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사회봉사명령

나. 스포츠토토 구매, 불법도박 및 유사행위에 참여·연루

- ①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이 가담한 경우
클럽에 대하여
 - 제명
 - 하부리그로의 강등
 - 1년 이내의 자격정지
 - 1년 이내의 선수영입금지
 -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② 개인에 대하여
 - 제명
 -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출장정지
 -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사회봉사 명령

다. 심판 매수 등 불공정 심판 유도행위 및 향응 제공

- (1) 심판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에 가담한 경우
 - ①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이 가담한 경우,
클럽에 대하여
 - 제명

- 하부리그 강등
- 1년 이내의 자격정지
- 10점 이상 승점 감점
-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경고

② 개인에 대하여

- 제명
- 36개월 이상의 출장정지, 자격정지
-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사회봉사명령

(2) 심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약속, 요구행위

①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이 가담한 경우,

클럽에 대하여

- 제명
- 하부리그 강등
- 1년 이내의 자격정지
- 10점 이상 승점 감점
- 5,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② 개인에 대하여

- 제명
- 1년 이상의 출장정지, 자격정지
-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사회봉사명령

(3) 경기 전후 심판 접촉 및 접촉 시도 행위

①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이 가담한 경우,

클럽에 대하여

- 하부리그 강등
-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 5점 이상 승점 감점
- 3,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② 개인에 대하여

- 제명
- 6개월 이상의 출장정지, 자격정지
-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사회봉사명령

라. 입학(입시)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① 개인에 대하여

- 제명

마. 무고·허위사실 제보

① 개인에 대해

- 제명
- 1년 이상의 출장정지, 자격정지
-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바. 자수자

- 징계 감경 또는 면제

사. 승부조작, 경기관련 도박, 기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 관련하여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클럽에 대하여

-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② 개인에 대하여

- 1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2.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의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

-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

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

- 3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클럽에게 위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

다. 심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1) 심판을 폭행하여 부상을 입게 한 경우

①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

클럽에 대하여

- 5점 이상 승점감점
 -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② 감독 및 코칭스태프
- 제명
 - 3년 이상의 출장정지
 -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③ 선수
 - 제명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출장정지
 -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2) 심판을 폭행한 경우

- ①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

클럽에 대하여

-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② 감독 및 코칭스태프

- 10경기 이상 2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③ 선수

- 10경기 이상 2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3) 심판에 대한 협박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언동

- ①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

클럽에 대하여

-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② 감독 및 코칭스태프

-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③ 선수

-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4)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

- ①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

클럽에 대하여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② 감독 및 코칭스태프

- 2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③ 선수

- 2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3. 폭력 행위

가. 부상을 입게 하여 치료기간 중 경기 출장이 불가능 한 경우

- ①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
클럽에 대하여
 - 1년 이내 기간의 자격정지
 -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② 감독 및 코칭스태프
 - 10경기 이상 3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③ 선수
 - 10경기 이상 3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 1,000만원 제재금 부과

나. 폭행, 또는 폭행 치상 행위

- ①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
클럽에 대하여
 -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② 감독 및 코칭스태프
 -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③ 선수
 - 2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다. 폭언, 모욕 및 협박하는 행위

- ①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
클럽에 대하여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② 감독 및 코칭스태프
 - 2경기 이상 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 2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③ 선수
 - 2경기 이상 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 2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라. 사적 제재 등 가혹행위

행위 유형에 따라 위 가. 나. 다의 기준을 준용

마. 경기장 시설물, 기물 파손 행위

- ① 감독 및 코칭스태프
 - 2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시설물, 기물 원상 복구 및 변상

- ② 선수
- 2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시설물, 기물 원상 복구 및 변상

바. 관중의 소요사태

- ① 클럽
- 하부리그 강등
 - 10점 이상의 승점감점
 - 무(無)관중 홈경기
 -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응원석, 원정응원석 폐쇄

사. 관중의 그라운드 내 이물질 투척

- ① 클럽
- 무(無)관중 홈경기
 -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응원석, 원정응원석 폐쇄

4.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인 행위

- ① 감독 및 코칭스태프
-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② 선수
-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5. 경기규정 위반

가. 클럽에 의해 리그 불참 및 출전 포기

- ① 클럽
- 하부리그 강등
 - 1년 이내의 자격정지
 - 10점 이상의 승점감점
 - 제재금 5,000만원
 - 경고

나. 공식경기 개최 거부 또는 진행 거부 행위

- ①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
 - 클럽에 대하여 징계
- ② 감독 등 코칭스태프
 - 1년 이내의 자격정지
 - 10경기 이상 2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③ 선수
 - 1년 이내의 자격정지
 - 5경기 이상 1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다. 공식경기 중단 및 재개지연 행위

- ①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
 - 클럽에 대하여 징계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② 감독 등 코칭스태프
 - 5경기 이상 1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③ 선수
 - 4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 4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라. 경기 중 확성기를 이용한 고성방가로 경기 진행을 방해한 경우

- ① 클럽
 - 2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마. 연맹, 클럽, 선수, 팀 스태프, 관계자를 비방한 경우

- ① 클럽
 - 2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바. 클럽이 안전가이드라인, 가변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등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 ① 클럽
 -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무(無)관중 홈경기
 -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사. 원활한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또는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경기감독관의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① 클럽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아. 경기규정 제 32조 ④항에서 정의한 무자격 선수를 경기에 출장시킨 경우

①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

클럽에 대하여

- 상벌규정 제12조 1항에 의거한 징계
- 이 경우 제재금 2,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감독 등 코칭스태프

- 1년 이내의 자격정지
- 10경기 이상 2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③ 선수

- 제명
- 5경기 이상 1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6. 범죄 및 기타 반사회적, 비윤리적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가.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특수강간, 강도 기타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① 감독 등 코칭스태프

- 제명
- 1년 이상의 자격정지
- 2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 1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② 선수

- 제명
- 1년 이상의 자격정지
- 2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 1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나.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1)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기타 '성폭력 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① 감독 등 코칭스태프

- 제명

② 선수

- 제명

(2) 그 외의 경우

① 감독 등 코칭스태프

-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 1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 1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② 선수

-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 1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 1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3)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은폐하다가 적발된 경우 징계 양정을 가중할 수 있다.

(4) 클럽이 소속 감독 등 코칭스태프나 선수의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 클럽에 대하여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죄(뺑소니)를 저질렀을 경우

① 감독 등 코칭스태프

- 제명
-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 1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 1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② 선수

- 제명
-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 1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 1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3) 도주운전 사실을 클럽에 신고하지 않는 등으로 은폐하다가 적발된 경우 징계 양정을 가중할 수 있다.

(4) 클럽이 소속 코칭스태프 및 선수의 도주운전 사실을 연맹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은폐한 경우, 클럽에 대하여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 음주운전

(1)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할 경우

① 감독 등 코칭스태프

- 8경기 이상 1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② 선수

- 8경기 이상 1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2)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할 경우

① 감독 등 코칭스태프

- 15경기 이상 2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 8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② 선수
 - 15경기 이상 2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 800만원 이상의 제재금

(3) 음주운전 사실을 클럽에 신고하지 않는 등으로 은폐하다가 적발된 경우 징계 양정을 가중할 수 있다.

(4) 클럽이 소속 코칭스태프 및 선수의 음주운전 사실을 연맹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은폐한 경우, 클럽에 대하여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마. 리그 관계자끼리 경기 및 리그 운영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금전 거래를 하거나 보증을 설 경우

- 제명
- 3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 5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바. 선수등록 이전의 폭력 등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1) 신인선수등록 시 제출한 범죄사실 유무 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것이 확인된 경우

- 3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 5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경고

(2) 본인이 과거에 행한 폭력 등 범죄행위의 피해자를 협박, 조롱하거나 피해 감정을 자극, 악화시키는 언동을 한 경우

- 제명
- 3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 5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사. K리그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기타 축구계의 공정질서에 반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여 K리그의 위신을 손상한 경우

①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

클럽에 대하여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② 개인

- 3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 5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7. 반도핑(약물검사) 위반행위

반도핑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ADA)의 프로스포츠 도핑 방지 규정, 국제축구연맹(FIFA) 도핑방지 규정, 아시아축구연맹(AFC) 도핑방지 규정을 적용한다.

8. **프로계약 위반**

가. 클럽과 선수의 계약 위반

(1) 이중 계약 또는 이면 계약

① 선수

- 5년간 K리그 등록 금지
- 해당 클럽과의 계약 및 등록 금지

② 클럽

- 1년 이내의 선수영입금지
- 제재금 5,000만원 부과
- 해당 선수와 영구 계약 금지

(2) 계약금 지급 가능선수 외 계약금 지급 위반

① 선수

- 5년간 K리그 등록 금지
- 해당 클럽과의 계약 및 등록 금지

② 클럽

- 6개월 이내의 선수영입금지
- 제재금 5,000만원 부과
- 해당 선수와 영구 계약 금지

(3) FA선수 교섭 기간 위반

① 선수

- 5년간 K리그 등록 금지

② 클럽

- 6개월 이내의 선수영입금지
- 제재금 5,000만원 부과
- 해당 선수와 영구 계약 금지

(4) 자유선발선수와 계약체결 시 출신 학교, 지도자 등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경우

① 선수

- 5년간 K리그 등록 금지
- 계약 내용 이외 초과 취득금액의 2배를 추징
- 해당 클럽과의 계약 및 등록 금지

② 클럽

- 2년간 모든 선수(외국인 포함) 영입 금지
- 제재금 1억원 부과

(5) 클럽이 선수에게 선수규정 제3조 제6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조 제7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지급한 경우
클럽에 대하여

- K리그1 소속 클럽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
- K리그2 소속 클럽의 경우 5억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
- 선수영입금지 (가장 가까운 1회의 등록기간 중 기존에 등록된 선수 외 다른 선수 등록 불가)

(6) 기타 계약 위반

- ① 선수
 - 5년간 K리그 등록 금지
 - 해당 클럽과의 계약 및 등록 금지
- ② 클럽
 - 6개월 이내의 선수영입금지
 - 제재금 5,000만원 부과
 - 해당 선수와 영구 계약 금지

나. 클럽의 선수 연봉 체불

- ① 클럽
 - 하부리그로의 강등
 -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
 - 1점 이상의 승점 감점
 -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다. 클럽 혹은 선수가 TPO(Third Party Ownership)와 관련하여 연맹 선수규정 제4조 제6항, 제7항을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① 선수
 -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해당 클럽과의 계약 및 등록 금지
- ② 클럽
 - 5,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9.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

가. 클럽 혹은 클럽의 임직원이나 감독 등 코칭스태프, 선수의 행위

- ①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
클럽에 대하여
 -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② 감독 등 코칭스태프
 - 1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③ 선수
 - 1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④ 클럽
 - 10점 이상의 승점감점
 - 무(無)관중 홈경기
 -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경고

나. 경기장 입장관중에 의한 행위

- ①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

클럽에 대하여

- 5점 이상의 승점감점
- 무(無)관중 홈경기
-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경고

<변경. 2026/01/16 개정>

10. K리그 비방, 명예실추 행위

- ①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

클럽에 대하여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② 개인

-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및 출장정지
-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11. 재정건전화규정 및 세칙 위반

가. 재정건전화규정 및 세칙 내 의무로 명시된 재무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클럽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재무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클럽에 대하여

- 3점 이상의 승점 감점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경고

(2) 클럽이 고의로 재무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클럽에 대하여

- 하부리그로의 강등
- 1년 이내의 선수영입금지

- 5점 이상 승점 감점
-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나. 클럽의 귀책사유로 손익분기점 지표 또는 선수비용 최대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클럽에 대하여

- 하부리그로의 강등
- 1년 이내의 선수영입금지
- 3점 이상 승점 감점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경고

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클럽이 연맹에 제출한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개선안에 따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클럽에 대하여

- 1년 이내의 선수영입금지
- 3점 이상 승점 감점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경고

12. 연맹 정관, 및 규정, 이사회, 종재위원회 결정사항 및 지시사항 위반

<변경. 2026/01/16 개정>

가. 연맹 정관, 규정, 이사회 결정사항 위반

① 클럽에 대하여

- 5점 이상의 승점 감점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② 개인에 대하여

- 제명
-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및 출장정지
-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사회봉사명령

나. 부정방지 업무에 관한 연맹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① 클럽에 대하여

- 2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경고

② 개인에 대하여

-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및 출장정지
- 2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사회봉사명령

- 경고

13. 벌점 및 제재금

(1) 페어플레이와 관련하여 팀의 초과 벌점에 대한 제재금은 시즌 총 벌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① 경고, 퇴장 벌점 기준 및 적용

- 파울 : 1점
- 경고 : 5점
- 퇴장 : 10점
- 경고 2회로 인한 퇴장의 경우 퇴장 벌점(10점)을 적용하며, 코칭스텝, 후보선수의 경고 및 퇴장도 팀 벌점 수에 포함한다.

② 벌점에 따른 제재금 산정 방식

라운드별 팀 벌점 합산	제재금	
	K리그1	K리그2
~40점	-	-
41점~45점	50만원	25만원
46점~50점	100만원	50만원
51점~	200만원	100만원

- ③ 팀별 누적된 제재금은 시즌 종료 후 연맹의 공식 통보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별표2]
포상의 대상 및 기준
1. 단체상 및 개인상 시상 기준
가. 단체상 시상 기준

구분	내용	선정 방법	포상 시기
우승	각 대회별 1위팀	대회 규정 의거	우승팀 결정시
준우승	각 대회별 2위팀	대회 규정 의거	준우승팀 결정시
페어플레이상	<p>공식경기에서 경고 및 퇴장에 의한 벌점 수가 최소인 팀이며, 2개 팀 이상일 경우에는 대회 성적 상위 팀 (대회 규정에 의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벌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1점 · 퇴장 3점 ② 벌점 적용 : 경고 2회 퇴장의 경우 경고 벌점(2점)을 적용하며, 코칭스태프의 경고 및 퇴장도 팀 벌점에 포함한다. ③ 상벌위원회 징계 : 선수단 및 클럽(임직원 포함)에 부과된 징계는 그 내용에 따라 벌점에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정지 1경기 : 3점 · 제재금 100만원 : 3점 	기록 (벌점 산정 기준)	시즌 종료 후
팬 프랜들리 클럽상	가장 활발한 마케팅과 팬 서비스를 펼친 클럽	전문가 평가 및 기자단, 팬 투표	연간 3회 시상 시즌 종료 후 종합 시상
풀 스타디움상	유료 평균관중 최다 클럽	기록 (유료관중)	연간 3회 시상 시즌 종료 후 종합 시상
플러스 스타디움상	전차대비 유료 평균관중 증가 최다 클럽	기록 (유료관중)	연간 3회 시상 시즌 종료 후 종합 시상
그린 스타디움상	그라운드 상태 최우수 경기장	경기감독관, 양팀 주장, 주심, 부심의 그라운드 평점 취합 후 최소, 최고 점수 제외 후 <u>평가선수대표</u> , <u>공식시험기관의</u> <u>그라운드 평점 종합</u>	연간 3회 시상 시즌 종료 후 종합 시상
그린 스타디움 발전상	작년 대비 그라운드 상태 개선이 가장 많이 된 경기장	경기감독관, 양팀 주장, 주심, 부심의 그라운드 평점 취합 후 최소, 최고 점수 제외 후 평가	시즌 종료 후 종합 시상
사랑나눔상	연간 사회 공헌 활동 지수 최고 클럽 (사회공헌활동 횟수, 언론노출 등)	전문가 평가·추천 후 상벌위원회 심의	
유소년 클럽상	연간 유소년 성과·활동 최고 클럽	연맹 사무국 추천 상벌위원회 심의	
라운드 MVP	라운드별 최고 활약 선수	기술위원회 선정	라운드 종료 후

이달의 감독상	월별 최고 활약 감독	기술위원회 선정	시상
---------	-------------	----------	----

<변경. 2026/01/16 개정>

나. 개인상 시상 기준

- ① 후보선정위원회가 클럽에서 제출한 명단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단, 클럽은 당 시즌 연맹 상벌위원회 징계를 받은 자 중 5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혹은 600만원 이상의 벌과금 조치를 받은 자는 후보로 제출할 수 없다.
- ② 후보선정위원회는 경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경기 위원, 외부전문가 등 약간명으로 구성된다.
- ③ 기타 투표 관련 세부 운영방안은 후보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구분	내용	선정 방법	포상 시기
최우수선수상	시즌 최우수 활약 선수	기자단 투표 선수, 지도자 투표	시즌 종료 후
감독상	시즌 최우수 활약 감독	기자단 투표 선수, 지도자 투표	시즌 종료 후
베스트 11상	K리그1/K리그2 시즌 포지션별 최고 활약 선수	기자단 투표 선수, 지도자 투표	시즌 종료 후
영플레이어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K리그1/K리그2 출장 선수 중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 ① 한국 국적 선수(홈그로운 선수 포함) ② 만 23세 이하 ③ K리그 출장횟수 3년 이내 ④ 해당 시즌 $\frac{1}{2}$ 이상 출장 ⑤ 과거 해당 리그 영플레이어상 미수상자 ⑥ 과거 상위 디비전 영플레이어상 미수상자	기자단 투표 선수, 지도자 투표	시즌 종료 후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신설)	영플레이어상 수상 조건을 충족하는 선수 중 각월에 최고 활약 선수 (신설)	기술위원회 선정	매월 시상
득점상	대회별 최다 득점 선수	기록 (대회 규정 의거)	대회 종료 후
도움상	대회별 최다 도움 선수	기록 (대회 규정 의거)	대회 종료 후
이달의 선수상	매월 최고 활약 선수	기술위원회 평가 및 팬 투표	매월 시상
해트트릭(득점)	득점 해트트릭 기록	기록	기록 달성 후
해트트릭(도움)	도움 해트트릭 기록	기록	기록 달성 후
전경기 전시간 출장	시즌 소속팀 공식경기 전경기 전시간 출장자	기록	시즌 종료 후

2. 기타 개인 기록 시상

구분	내용	상금	비고
해당연도	해트트릭(득점)	50만원	
	해트트릭(도움)	30만원	
	전경기 전시간 출장자	500만원	시즌 공식경기 전경기 전시간 출장자

3. 포상 내역

가. 대회 : 각 대회 규정(또는 대회 요강)에 의한다.

나. 시즌

구분	포상 내역
최우수선수상	트로피, 상금(1,000만원)
영플레이어상	트로피, 상금(500만원)
감독상	트로피, 상금(500만원)
최우수 주심상	트로피, 상금(500만원)
최우수 부심상	트로피, 상금(300만원)
K리그1 베스트 11상	트로피, 상금(300만원)
팬 프랜들리 클럽상	트로피, 상금(200만원)
풀 스타디움상	트로피, 상금(200만원)
플러스 스타디움상	트로피, 상금(200만원)
그린 스타디움상	트로피, 상금(200만원)
전경기 전시간 출장자	기념패, 상금(500만원)
해트트릭(득점)	상금(50만원)
해트트릭(도움)	상금(30만원)

다. 부정 ·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1) 금품매수 및 수수행위

- 자진신고 및 반납 금액의 10배

(2) 금품 및 향응 제의 또는 요구행위

-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라. 클럽이 선수에게 선수규정상 지급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 10억원 이하로, 클럽에 부과된 제재금에 상응하는 금액

4. 기타

K리그 및 한국 축구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선정 방법	포상 시기
표창	연맹 임직원 또는 회원단체 및 연맹 관할 범위 내에 있는 자로서 업무 수행이 타의 모범이 된 자	상별위원회 심의	수시
공로상	연맹 직원이 아닌 K리그 관계자로서 K리그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상별위원회 심의	시즌 종료 후
	K리그 선수로서 은퇴하는 시점에 누적 출전 경기수가 300경기 이상인 자 또는 K리그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상별위원회 심의	수시
감사상	연맹 직원 및 K리그 관계자가 아닌 자로서 K리그 발전에 적극 기여한 자	상별위원회 심의	시즌 종료 후

개정내역

2020/01/20	개정
2020/04/24	개정
2020/05/27	개정
2020/08/19	개정
2021/01/18	개정
2021/10/08	개정
2022/04/14	개정
2023/10/24	개정
2023/12/04	개정
2024/01/15	개정
2024/02/23	개정
2024/11/29	개정
2025/06/19	개정
2026/01/16	개정



한국프로축구연맹

www.kleague.com

